

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101호서식]<개정 2015.7.1>

육아휴직 급여 지 급 결정 통지서
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

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Table with 4 columns: 신청인, 성명, 양종주, 생년월일 (1993년 09월 10일), 주소 (61754)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02동 908호, 신청대상기간 (2025/07/04 ~ 2025/08/03), 신청일 (2025/08/04), 결정내용 (지급액: 1,600,000, 산출명세: 지급결정액=1600000, 잔여지급결정액=0)

- 1. 지급안내 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됩니다.
2. 심사청구 안내
가. 위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나.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담당자명 송은주 담당자연락처 062-609-8652

2025년 08월 13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받는 사람

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
102동 908호
양종주
61754

